

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(제3조관련)

1. 운용인력기준

특수의료장비의 종류		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	전산화단층촬영장치	유방촬영용장치
항목				
용 도 구 분		전신용 두부전용 척추전용 관절전용 척추 및 관절전용 두부 및 척추전용 두부 및 관절전용	전신용 두부전용 흉부전용 복부전용 척추 및 관절전용 두부 및 척추전용	유방용
운 용 인 력 기 준	진단방사선과 전문의	전속 1인 이상	비전속 1인 이상	비전속 1인 이상
	방사선사	전속 1인 이상	전속 1인 이상	비전속 1인 이상

2. 시설기준

가.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

특수의료 장비		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	전산화단층촬영장치
항목			
시 설 기 준	시지역 (광역시의 군 포함)	1)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 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. 2)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 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 용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공 동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 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 관과의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 되어야 한다.	1)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 하여 설치할 수 있다. 2)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 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, 이 경 우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 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 의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 되어야 한다.
	군지역 (인구 10만 이하의 시지역 포함)		1)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 하여 설치할 수 있다. 2) 1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 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, 이 경 우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 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 의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 되어야 한다.
비 고		1. 종합병원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 2. 시설기준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공동 활용동의는 2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할 수 없다. 3.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	

	설치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·군·구와 동일한 시·군·구에 소재하거나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·군·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한한다. 4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및 조산원,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「정신보건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 시설기준등에 따른 정신병원, 정신과의원, 「결핵예방법」 제25조에 따른 결핵병원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5. 도서지역 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치인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--	--

나. 유방촬영용장치

해당없음